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7)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자: 박경희 의원 등 17명
- 의안번호: 제5187호

2. 제안이유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조사업무를 명확히 하고 조례 성격과 맞지 않는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자문 사항을 수정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추진 가능성 있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규정 신설(안 제7조)
- 아동보호 민간협의체를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
-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11조)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2조제3항, 제46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6. 20. ~ 06. 26.): 의견 없음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5. 집행기관 의견: 동의

6.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 동 조례안은 정부가 2020년 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 규정한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규정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남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취지와 규정의 형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구조 해체 및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2021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6%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성남시 내, 지난 3년간 파악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558건이며, 이중 953건(61.2%)이 학대판정을 받았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단위: 건)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단	혐의없음	비고
2020년	380	289(76.1%)	91(23.9%)	
2021년	672	396(58.9%)	276(41.1%)	
2022년	506	268(53.0%)	238(47.0%)	
2023. 5.	238	91(38.2%)	147(61.8%)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는 제4호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센터” 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명칭을 재정의 하였고 같은 법 제46조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함.

개정안 제2조(정의)

4.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 교육·홍보 등 법 제4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7조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²⁾에 근거하고 있음.

이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향후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제7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9조는 현행 제8조(아동보호 민간협의체 설치)를 삭제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의·자문 기구인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를 설치 사항을 규정함.

1)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위원회는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성남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된 위원은 아동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논의를 기존에 하고 있기에 추가 위원회 구성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것임.

개정안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안 제11조는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현행 제11조에는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검토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의성이 요구되기에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제11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4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촘촘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시장은 4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는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아동 보호 방안 마련과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 그리고 해결 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주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실태조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실태조사 주기를 장기적으로 규정할 경우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뒤떨어질 것으로 판단됨.이에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여 자료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최근 3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건)

연도별	신고접수	학대판단	혐의없음	비고
2020년	380	289	91	
2021년	672	396	276	
2022년	506	268	238	
2023. 5.	238	91	147	

② 학대행위자 유형별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친부	친모	계·양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교원 (학원강사등)	낮선 사람 등
2020년	289	129	112	9	21	12	6
2021년	396	194	142	15	24	16	5
2022년	268	133	76	8	7	37	7
2023. 5.	91	52	23	4	3	8	1

③ 학대 유형별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신체	정서	성	방임	중복	비고
2020년	289	63	64	8	19	135	
2021년	396	111	113	3	38	131	
2022년	268	92	79	2	12	83	
2023. 5.	91	38	36	0	0	17	

④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5.
인원	0	0	2	0

⑤ 재학대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5.
인원	15	29	19	11

⑥ 아동학대 발견율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5.
전체 아동	137,583	133,177	129,472	128,808
학대피해아동	289(2.1%)	396(2.9%)	268(2.0%)	91(0.7%)

관계 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